

712	잡종지	7	36	잡종지	7
812-1	제방	149	37	제방	149
812-2	〃	17	38	〃	17
813	〃	298	39	〃	298
817-1	도로	621	40	도로	621
809-1	〃	2,397	41	제방	2,397
811-1	제방	182	42	〃	182
811-2	〃	53	43	〃	53
809-2	〃	23	44	〃	23
810-1	〃	2,175	45	〃	2,175
815	〃	2,026	46	〃	2,026
816	〃	1,035	47	〃	1,035
817	하천	3,491	48	하천	3,491
817-2	〃	6,397	49	〃	6,397
785-1	제방	2,570	50	제방	2,570
799-2	〃	443	51	〃	443
807	〃	509	52	〃	509
800	〃	1,640	53	〃	1,640
801	〃	1,170	54	〃	1,170
802	〃	43	55	〃	43
806	〃	89	56	〃	89
803	하천	1,633	57	하천	1,633
804	〃	1,200	58	〃	1,200
805	〃	13,630	59	〃	13,630
795	〃	1,021	60	〃	1,021
796	제방	754	61	제방	754
793	〃	463	62	〃	463
794	하천	711	63	하천	711
789	〃	582	64	〃	582
790	제방	440	65	제방	440
817-3	하천	76	66	하천	76
계					153,746

변경전(도경림전동)				변경후(문래경동6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번	지목	면적 m ²	
683-1	하천	843		51	하천	843	
683-2	〃	77,329		52	〃	77,329	
686	제방	1,739		53	제방	1,739	
계						79,911	

· 개정조례안 (13면에 실음)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우리구 보건소수가 조례에 수수료 및 진료비의 별표중 유료접종 항목에 명시되지 아니한

유행성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을 추가하여 국민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2조 제2항 별표 수수료액중

- 4호“라”의 장티푸스 예방접종 단위중 “경구용” 삭제
- 4호“마”에 유행성출혈열 신설
- 4호“바”에 렙토스피라증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1					1				
2 생략					2 생략				
3					3				
별표(수수료액표)					별표(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4. 유료 접종	가. 일본뇌염	1ml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 유료 접종	가. 일본뇌염	1ml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1회분	나.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 의원의 접종수수료는 약품 공급가격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중생물학적 제제 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뇌염접종은 피하근육 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1회분	나.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 의원의 접종수수료는 약품공급가격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중생물학적 제제 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뇌염 접종은 피하근육 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준한다.	
	다. 간염	1ml	다. 전염에 의한 지장병의원에 의 유료접종 약품공급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다. 간염	1ml	다. 전염에 의한 지장병의원에 의 유료접종 약품공급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라. 장티푸스	경구용 1인분				라. 장티푸스	1인분		
						마. 유행성 출혈열	0.5ml		
						바. 렙토스 피라증	1ml		

· 개정조례안 (14 면에 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중 6. 행정관리분야에 다음사항을 추가하고

7. 구의회관련분야 다음에 8. 위생분야와 9. 기타분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관리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공과금요원	8급상당	1. 공과금자료의 정리보존 2. 공과금 업무 분석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6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 업무경력이 2년이상 인자 · 9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공과금경력이 1년6월이상인자	

8. 위생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영양사	8급상당	구내식당급식관리	· 영양사자격증소지자	

9. 기타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광고물관리원	7급상당	옥외광고물 관리	· 4년제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이상인자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 (별표) 개정 연혁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 개정 연혁표 >

- 도림동 440번지를 기점으로 746번지의 3호 및 429의 1호를 연하는 남쪽지역중 425번지 3호를 기점으로 한 철로 이북지역을 문래동 1가에 편입
- 도림동 767의 1호 남단을 기점으로하여 747의 1호 북단에 이르는 남쪽 지역중 철로를

